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규정 신설 등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3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규정 신설(안 제139조 제2항)	2
2.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안 제139조제3항)	8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6. 23.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몰수·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Ⅲ. 검토의견

1.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근거규정 신설(안 제139조제2항)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9조(몰수)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9조(몰수·추징 등)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제1항에 따른 몰수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생 략)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확산방지 및 추가피해 발생을 위해, 저작권법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복제물의 제작에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1) 「저작권법」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하거나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일례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영화·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무단 배포하여 부당한 수익을 챙긴 “○○티비”의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미디어 업계의 피해액이 약 5조원으로 추정²⁾(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 추정액 약 333억원³⁾)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3억 7,480여만원 수준으로 확정⁴⁾되었음. 이와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관련 업계 등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이 매우 미미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문제제기⁵⁾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작물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공유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추정

*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MBC, KBS, CJ ENM, JTBC 등 방송사,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OTT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등이 참여한, 국내외 영상 산업 전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업계의 자율 협의체임.

3) 「'누누티비 셋다운' 끝 아니다…5조 피해 넘어 '불법OTT' 쏟아진다」, 뉴스1, 2023.4.14.

4) 「[단독]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상고기각 결정」, 뉴시스, 2026.1.26.

5) 「2025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저작권 보호 전문가 합동 워크숍저작권 침해 범죄 양형기준 상향 관련 쟁점과 대응과제-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 김현숙 소장 토론문」, p.33, 한국저작권 보호원, 2025.6.27.

다만,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저작권법을 위반한 일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관련 수익인 경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이에 부

6)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별표에 규정된 죄(*유가증권 위조·변조,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등 유통·시청하는 행위 등)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2. “범죄수익”이란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및제6조(제5조 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제6조 제1항 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권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량을 받은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함.

둘째, 다른 범죄수익 몰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136조⁷⁾에 따른 범죄 관련 수익 및 해당 범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7) 「저작권법」

제136조 ①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보며 몰수·추징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이 저작권 침해, 법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비밀 유지 명령 위반, 저작자·실연자의 명예 훼손 및 저작권 거짓등록 등 경중이 다양한 위반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통상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범죄수익 몰수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자의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저작권 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 타 지식재산분야 법령에서도 “침해물”에 대한 몰수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행위 방지 필요성, 다른 범죄수익 몰수와의 형평성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

(안 제139조제3항)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9조(몰수) (생략) <신설> <신설>	제139조(몰수·추징 등)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략)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음. 동 기금의 규모는 2026년 예산 기준으로 약 6,132억원 수준⁸⁾이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① 정부 출연금, ② 개인·법인의 기부금, ③ 동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⁹⁾으로 하고 있음.

8)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4권」, 문화체육관광부, 2025.9.

9)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과거 공연·전시 관람료 등에 부과되던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¹⁰⁾으로 동 부담금이 폐지된 이후 자체 수익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동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귀속시켜 이를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 생태계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을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한정된 분야를 지원하는 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영역은 어문·음악·연극·영상 등 문화예술부분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도형·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산업적 저작물

10)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나 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을 부과해 모금하도록 한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가2)

등 광범위한 저작물까지 보호¹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을 「저작권법」 보호 영역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¹²⁾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목적을 달리 한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은 “불법적 범죄수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범죄수익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적은 측면이 있음.

1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측면과 동 기금과 「저작권법」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죄수익의 몰수·추징금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납입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 손해보전에 필요한 변제재원이 감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곤란해지고, 사인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이 국고로 이전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한국방송협회의 경우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 관련 범죄로부터 환수된 재원은 개별 권리자의 손해와 관련이 있는 재원이므로 피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과 관련한 법체계 타당성을 위해 동 기금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¹³⁾도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 의 처
02)6788-5376

「특허법」

제231조(몰수 등) ①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36조(몰수) ①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28조(몰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명	주요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 마. (생략)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나. (생략)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5. (생략)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

	<u>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한다. <신설 2025. 12. 16.></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2. 16.> ④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 12. 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6.>
--	--